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 중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외국 공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등기관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함 (안 제46조제9항)

4.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 호 2017. . . 공포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공증담당영사의 부존재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을 수 없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 또는 공증된 외국 공문서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첨부정보) ① ~ ⑧ (생 략) <신 설>	제46조(첨부정보)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공증담당영사의 부존재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을 수 없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